

부산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18가단1532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변론 종결 2021. 1. 21

판결 선고 2021.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D 소재 폐유,폐유기 용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W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정제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해 영업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2014. 7.경부터 2015.

10.경까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정제유 가격도 하락하여 수익 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난을 겪게 되자 H,I,J 등 지점장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투자자 들을 상대로 마치 정제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하면 서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 약정 기간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리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투자 자들로부터수백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E와 각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E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번호	투자날짜	투자금액	변제기	수익률
1	2016. 7. 12.	100,000,000	2017. 7. 11.	연 6%
2	2016. 7. 29.	40,000,000	2017. 1. 28.	연 6%
3	2016. 8. 2.	50,000,000	2017. 2. 1.	연 6%
4	2016. 8. 30.	10,000,000	2017. 2. 29.	연 6%
5	2016. 11. 17.	50,000,000	2017. 5. 16.	연 6%

<단위 :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피고 B는 E의 서울 본점 소속 지점장,피고 C는 부산지점장으로서 공모하여원고에게 E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하여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이 E에게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2) 그러나 E는 위 표 순번 1, 2번 투자금에 대하여는 각 6개월간, 3, 4번 투자금 에 대하여는 각

5개월간, 5번 투자금에 대하여는 2개월간의 약정 투자수익금만을 지급 하였을뿐 그 이후의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들은 E의 대표이사 G와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피고들이 유치하는 투자금에 대하여 E로부터 월 10% ~ 13%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는 월 6%의 수익금만을 교부 함으로써 적어도 매월 4%에 해당하는 수익금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9,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들이 E의 지점장으로서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일이 있는 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년 형제13368호 피고 C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20.

6. 30. 「E의 부산지점장으로서 본점 소속 지점장 피고 B, 대표이사 G 등과,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여 마치 E가 정제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 약정 기간 동안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1. 20.경부터 2017. 2. 9.경까지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 리 회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정제유를 수입한 후 국내 제 조공장 등에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이 1,5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수익률은 10~15%나 되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해 줄 수 있다.

국내 화 력발전소에 수입 정제유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에 더 많은 정제유를 공급해 주 기위해 많은 양의 정제유를 수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고 국내에 경쟁사가 없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은 물론 투자원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개월에서 1년의 투자약정 기간 동안 월 3,5%의 수익 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에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고 설명하여 57명의 투자자들로 부터 합계 1,440,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공소 장의 피해자 목록에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E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금덕 희